

● 건설공사집행규정(0602)

제정 1998. 1. 1. 규정 제 24호
 개정 2005. 1. 18. 규정 제167호
 개정 2006. 1. 16. 규정 제196호
 개정 2009. 2. 23. 규정 제309호
 개정 2010. 7. 7. 규정 제353호
 개정 2012. 10. 25. 규정 제404호
 개정 2014. 8. 21. 규정 제449호
 개정 2018. 11. 27. 규정 제54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 및 양질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사현장 및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건물, 시설물, 토지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1.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상위규정 또는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 협의체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8.11.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라 함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공사 등을 말한다.
2. “설계서” 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개정 14.8.21>
3. “수급인” 이라 함은 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하수급인” 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공사감독자” 라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14.8.21>

6.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4.8.21>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이하 “분야별 기술자” 라 한다)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14.8.21>
8. “공사관리관” 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14.8.21>
9. “하자보수감독자” 라 함은 공사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건설공사의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기간 중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관리소장에서 위임된 사항은 관리소장을 하자보수 감독자로 본다.

제 2 장 공사 감독

제4조(공사감독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에 공사감독자를 둔다. <개정 14.8.21>

제5조(공사감독자의 임무) 공사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06.1.6>

1.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정한 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또는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시공한 상태가 계약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상태로 시공되게 하거나 수급인의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여 건설공사가 원활히 시공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상세업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14.8.21, 18.11.27>

제6조(공사감독자의 업무대행)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관리관”을 두며,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제5조의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14.8.21>

제 3 장 시 공 관 리

제7조(착공통고) ① 공사 감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11.27>
 ② 담당 부서장은 건설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 진척 상황보고) 공사 감독자는 매주 또는 매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진척상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발생보고 등) ① 공사 감독자는 건설공사

의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18.11.27>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8.11.27>

제10조(건설공사의 관리) 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시공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공상세도를 수급인에게 제출받아 이를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초 심의할 때에 검토 승인된 도면대로 시공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현장대리인 등의 배치, 하도급승인, 공사중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18.11.27>

제11조(현장점검) 담당 부서장은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기한의 연기) 수급인이 제출한 공사기간 연기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4 장 자 재 관 리

제13조(건설공사용 자재의 검사) ① 건설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관계시방서 등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8.11.27>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자재를 건설공사에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자재의 관리) ①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반입된 지급자재를 수급인에게 인도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② <삭제 18.11.27>

③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의 검수에 의하여 불합격한 경우 지급자재를 지체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반입을 금지해야 한다.

④ 자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 <신설 18.11.27>

제 5 장 설 계 변 경

제15조(설계변경의 원칙 등) ① 당초 설계할 때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 및 현장여건의 변화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동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2. 지형, 토질, 지하매설물의 변동
 3.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될 경우
 4. 시설물의 기능 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5. 골재원 또는 자재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6. 현장여건상 시공이 어려운 경우
 7. 설계조건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8. 설계당시에는 없었던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어 공사비절감 및 하자요인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시행코자 할 때 공사 감독자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붙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③ 설계변경의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설계변경) 공사감독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 수급인에게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검 사

제17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는 기성 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사용검사), 하자보수 완료검사 및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하는 특별검사로 구분한다.

제17조의2(검사의 절차) ① 담당부서장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서가 첨부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이 접수되었을 때는 검사자를 임명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검사의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8.11.27]

제18조(대가의 지급청구) ①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원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원의 내용이 계약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 기타 약정대로 시공,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미준공보고) ① 공사감독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기한까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공기한의 지연사유와 공사완료 예정일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0.7.7>

제20조 <삭제 18.11.27>

제21조 <삭제 18.11.27>

제22조 <삭제 18.11.27>

제23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 준공검사를 행하는 검사자는 수급인의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검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계약사항 불이행 시 지체없이 미준공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8.11.27>

제24조(해약후의 검사) 공사가 건설공사 계약을 해약한 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는 기성부분과 현재 재료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재의 합격품에 대한 수량, 가격, 사용여부 및 가공여부의 명세를 검사조서에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11.27>

제 7 장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제25조(준공일) ① 건설공사가 준공검사(사용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준공일은 수급인이 제출한 검사원을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날로 한다.

② 준공검사(사용검사)기간 중 시정할 수 있는 경

미한 사항으로 검사자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하여 시정된 경우의 준공일은 제1항과 같이 한다.

③ 검사자가 미준공 조치를 하여 수급인이 시정을 완료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사용검사)에 합격한 경우의 준공일은 재검사원을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날로 한다.

제26조(준공도면의 관리)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준공도면(원도포함)을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는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는 준공원도가 현장 시공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물의 인수) 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사용검사)결과 합격된 목적물을 수급인으로부터 인도받아야 한다.

② 인도받을 목적물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8.11.27>

제28조(표지판 부착) 준공검사(사용검사)에 합격되어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건축, 설비, 토목, 전기, 정보통신, 조경공사 등 시공업체 상호와 그 대표자 명칭 및 성명을 기재한 표지판(머릿돌)을 수급인에게 부착하도록 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10.7.7>

제29조(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인계) ① 담당 부서장은 제26조에 의하여 인도받은 도면을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8.11.27>

제30조 <삭제 10.7.7>

제31조(예비 준공검사) 건설공사 준공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예비준공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미진한 공중에 대하여는 준공기한 내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 각 공종별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관련법규, 관련규정 또는 지침에 의한 준공검사(건

축법상의 사용승인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장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

제33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① 담당부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하여 품질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0.7.7, 14.8.21>

② <삭제 10.7.7>

③ <삭제 10.7.7>

④ <삭제 10.7.7>

⑤ <삭제 10.7.7>

제34조(시험의 종류, 시험의 빈도, 시험의 실시 등) 공사가 실시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14.8.21>

제35조(시험결과 판정기준) 시험결과 판정기준은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지급 자재 구입시방서 및 KS규격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18.11.27>

제35조의2(환경관리) 공사감독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계획서 수립 및 이행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0.7.7, 개정 18.11.27>

제36조(세부 업무지침)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 제반 업무사항은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6.1.6, 10.7.7, 12.10.25>

제 9 장 시 공 평 가

제37조(시공평가) ① 건설공사 수급인에 대하여 시공능력, 성실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8.11.27>

② 시공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18.11.27>

제38조(평가대상 및 방법) 시공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06.1.6, 18.11.27>

제39조 <삭제 18.11.27>

제40조(평가결과 제출) ① 담당부서장은 시공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1.6, 18.11.27>
②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안 전 관 리

제41조(안전관리의 지도·감독 등) 담당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점검) ① 안전점검은 분기별 안전점검 및 월일별 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개정 18.11.27>
② 안전점검의 운영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 조치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8.11.27>

제43조(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수립 시행하며, 관련 업무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18.11.27>

제44조(안전점검 활동) ① 공사가 관리 또는 시행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은 수시로 이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은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지시키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케 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활동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8.11.27>

제45조 <삭제 18.11.27>

제46조 <삭제 18.11.27>

제47조(안전표지의 설치) ① 공사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적치장소
2. 중장비 작업장
3. 변압기 설치장소 및 고압전선 통과장소
4.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설치장소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안전표지의 제작요령과 기본모형, 색채, 안전표지 일람표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한다. <개정 18.11.27>
③ <삭제 18.11.27>

제48조(안전수칙) 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반주의 사항은 이를 안전수칙으로 정하며, 안전수칙의 대상 및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개정 18.11.27>
② 토목, 건축 등 위험이 있는 모든 공사작업현장에는 안전수칙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지원) 안전점검에 필요로 하는 인력 및 차량 등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제50조(사고의 구분) 사고는 중대한 사고와 경미한 사고로 구분하며 관련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18.11.27>

제51조(사고발생보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11.27>
②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 부서장은 재난대응기준에 의거하여 긴급조치를 하고 담당사업 본부장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2.23, 14.8.21>
③ 담당부서장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11.27>

제52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치료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활동

제53조(사고조사) ① 안전사고 조사는 담당 부서에서 하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보존, 증거보존 등 사실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 18.11.27>

제55조 <삭제 18.11.27>

제56조(제재조치) 제44조(안전점검 활동)에 따라 안전점검 후 발부한 점검결과 처리 지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소정 기일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 및 현장 대리인과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8.11.27>

② 제1항의 제재조치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18.11.27>

제56조의2(세부 업무지침) 안전보건관리 제반 업무사항은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규정” 및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업무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2.10.25>

제 11 장 격려 및 경고 등

제57조(격려 및 경고 등) ① 담당부서장은 효율적인 건설공사의 집행관리 및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격려 및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8.11.27>

② 제1항에 의한 격려 및 경고 등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8.11.27>

③ <삭제 18.11.27>

제58조(포상) ① 담당부서장은 건설공사 집행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에 공로가 있는 외부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그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05.1.18, 개정 18.11.27>

② 담당부서장은 건설관리업무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그 포상을 의뢰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98.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내부결재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05. 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7.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0.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8. 21>

이 규정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11. 27>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